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30 선고 2019나32382(본소), 2019나32399(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 · 공동구매대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6. 30 선고 2019나32382(본소), 2019나32399(반소) 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35680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부, 조영삼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인수

변론 종결2020. 5. 26.

판결 선고2020. 6. 30.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9. 24. 선고 2018가단35680(본소),
2019가단3360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154,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 :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반소 :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중개인인 C을 통하여 1kg당 16.5달러의 단가로 오징어를 매입하기로 하고 피고에게 물품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C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17달러로 올리면서 물건을 공급하지 않음으로써 약정을 위반함에 따라 2019. 2. 20.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물품대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와 피고의 공동구매약정 체결 여부 살피건대, 갑 제1, 4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중순경 중개인인 C으로부터 오징어 약

11톤을 1kg당 미화 16.5달러의 가격에 매입하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그에 따라 계산한 매매대금의 30%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피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5, 6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페루국 D사(D사, 이하 'D'라고 한다)가 수취인을 피고로 하여 작성한 작성일자 2017. 12. 20., 선적예정일 2018. 1. 17., 주문량 22톤, 매입단가 1kg당 미화 16.5달러인 주문서를 원고가 2017. 12. 22. C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60,000,000원을 받은 후 곧바로 총 매입대금의 30%에 해당하는 108,900달러를 D에 송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오징어를 공급받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와 함께 D로부터 오징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되 피고가 수입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추인할 수 있을 뿐이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에 이르러 C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위 C으로부터 오징어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을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송금하였을 뿐, 원고가 직접 피고와 공동구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이러한 원고와 C 사이의 계약은 오징어 매매대금 채권만을 피고에게 취득시키는 것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기 전 원고와 C의 계약이 해제되어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2019. 10. 8.자 항소이유서를 통해 피고와의 공동구매계약 체결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을 뿐 아니라,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C으로부터 수취인이 피고로 기재된 주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다음 2017. 12. 22. 6,000,000원을 C에게 송금하고, 물품대금 60,000,000원은 피고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으며, 피고가 바로 이를 D에 물품대금으로 송금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C 사이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내용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공동구매 약정의 해제 여부 원고의 주장을 피고와의 공동구매 약정을 해제한다는 주장으로 선행하여 살피건대, 갑 제3, 5, 6, 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7. 12. 22. C으로부터 오징어 약 22톤에 관하여 단가 1kg당 미화 16.5달러, 선적예정일 2018.

1. 17.인 D의 주문서를 이메일로 전달받은 사실, 원고는 위 선적예정일이 지나 C으로부터 D에서 1kg당 17달러로 단가를 변경할 것을 원한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8. 1. 29. 단가가 1kg당 17달러, 공급물량 20.3톤으로 변경된 D의 주문서를 전달받은 사실, D가 2018. 2.초경 오징어 20.3톤을 페루에서 선적한 사실, 원고가 C에게 중개비로 지급한 6,000,000원을 2018. 5. 30. 반환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4, 5, 6, 8, 9,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가 주문받은 오징어 20.3톤을 선적한 후 2018. 2. 7. 피고에게 송장을 보낸 사실, C은 2018. 2. 3. 칠레에 입국하였다가 2018. 2. 11. 출국하여 귀국한 사실, 피고가 2018. 3. 9. 잔금 236,200달러를 D에 모두 지급한 사실, 위와 같이 주문한 오징어 20.3톤이 2018. 3. 11. 부산에 도착해 2018. 3. 13. 반입되고 2018. 3. 14. 통관절차까지 마쳐진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반면,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8. 1. 29. C으로부터 단가가 변경된 주문서를 송부받고도 주문한 오징어가 선적될 때까지 단가 변경 또는 선적 지체를 이유로 공동구매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피고에 대하여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제1심증인 C은 원고가 단가 변경에 동의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결국 원고는 C 또는 피고로부터 공동구매하기로 한 오징어의 단가가 1kg당 17달러로 인상되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주문한 오징어가 페루에서 선적될 때까지도 피고에 대하여 단가 변경 또는 선적 지체를 이유로 공동구매 약정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인상된 단가를 기준으로 D로부터 오징어를 수입하는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단가가 변경된 것을 두고 피고가 공동구매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앞서 본 것처럼 선적된 오징어가 반입되어 수입신고까지 마쳐진 이상 피고가 공동구매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그 이행이 불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와의 공동구매 약정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피고를 상대로 물품대금 60,000,000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함께 D로부터 오징어를 공동으로 구매하여 수입하되 피고가 수입 및 통관 절차를

진행하고 그 비용을 반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2, 5, 6, 9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매매대금 및 수입 비용으로 2018. 3. 14.까지 총 428,069,625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공동구매약정에 따라 그 50%에 해당하는 214,034,812원(= 428,069,625원 ÷ 2, 원 미만 버림)에서 선지급한 물품대금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154,034,81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위 154,034,812원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것을 구하나, 위와 같이 통관절차를 마치고 원고가 오징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날이자 피고가 비용을 지급한 날인 2018. 3. 14.의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또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을 뿐이다.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나.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공동구매 약정에 따른 물품대금 및 비용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물품 인도의무의 이행을 받기 전에는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고, 이처럼 원고에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는 이상 원고의 물품대금 지급의무가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아 피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1호증의 각 영상, 제1심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오징어의 통관 일시를 전후한 시점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로 하여금 주문한 물품을 수령하여 갈 것을 요구하고, 원고가 대금환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창고에 물품을 보관하여 두고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수령을 거부하면서 지급한 대금을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금전대금지급채무를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를 밝혀 온 사실, 피고는 2018. 12. 11.자 답변서를 통해 피고가 보관 중인 물품을 인수하여 갈 것을 최고한 이래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로 하여금 주문물품의 수령을 거듭 최고하여 온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오징어 인도의무의 이행의 제공을 중단한 적 없이 계속하여 오고 있으므로 원고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소멸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동시이행의 항변은 이유 없으며, 나아가 원고의 금전지급채무는 원고가 오징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날이자, 피고가 비용을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계속적으로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류경진

판사차영욱

판사홍유정